

## 국 가 교 정 기 관 취 소

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관련 국가교정기관 인정제도 운영  
요령 제30조(인정취소등)에 의거 아래와 같이 취소 공고하고자 합니다.

2005. 11. 30

기 술 표 준 원 장

인정번호	기 관 명	대표자	인 정 취 소 분 야	유효기간	취소사유
KC02-114	인천산업계기(주)	서달문	질량및관련량(힘)(1항목)	2002.03.14~ 2007.03.13	자진반납
KC03-163	에어텍(주)	정지영	온도및습도(온도)(12항목)	2002.10.30~ 2007.10.29	교정실무능력부족 및 교육미이수

부칙 :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끝.